Ⅳ. 감독정책

1. 금융소비자 보호

〈국정과제 29 : 소비자 권익 보호〉

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

- (추진계획) 「금융소비자 보호법」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고 소비자 역량 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
  -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
  - 금융, 교육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모니터링 지속 실시
- (대선공약과의 비교) 연금상품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, 투자자의 금융회사 성과비교가 용이하도록 비교 공시체계를 구축하며, 금융수수료, 영업관행 등을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
- (대책) 상품비교공시 체계의 정비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상품설계 단계에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 소비자 지향적인 보험회사 운영이 필요
  -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막을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로 굳어짐.

2. 유사보험 감독

〈국정과제 33 :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〉

■ 유사보험 감독 강화

- (추진계획) 한미FTA 협정사항[3]의 이행 차원에서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수협, 신협 보험부문 등 유사보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영보험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
  - 금융위원회(신협), 해양수산부(수협), 안전행정부(새마을금고),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여 관련법규 개정
- (영향)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이 보험회사 수준으로 강화되면 공정한 경쟁 기반이 마련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
3. 금융안정성

〈국정과제 35 :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〉

■ 제2금융권 대출 모니터링 강화

- (추진계획) 보험회사와 상호금융 등 가계대출 규모가 큰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속도와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, 금융권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 노력을 지원하도록 유도

---

3) 한미FTA 제13장 부속서 13-나 제6절: 분야별 협동조합 판매보험(Annex 13-B Section F : SECTORAL COOPERATIVES SELLING INSURANCE) 및 부속서 13-라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공급(Annex 13-D Supply of Insurance by the Postal Services to the Public).

- (영향) 보험회사의 약관대출과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가계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즉시적 개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체계를 유지 및 보완